

청소년동아리연합회 ‘Unique’ 운영 규칙

2023. 4. 1.

제1조(목적) 본 회칙은 편그라운드 진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Unique’ 운영에 필요한 역할과 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동아리’란 편그라운드 진접에서 청소년들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동아리로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1항 근거)를 말한다.

제3조(동아리의 활동) 편그라운드 진접의 동아리는 아래 각 호의 활동을 참여한다.

1. 편그라운드 진접 청소년동아리연합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2. 편그라운드 진접 정기회의 및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 및 대외활동을 참여한다.
4. 동아리회원의 활동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를 위한 온라인 활동에 협조한다.
5. 기타 동아리 운영과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동아리 회원자격) 동아리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 학교 9~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2인 이상의 정규회원을 확보한다.
3. 동아리 규정 제3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4. 활동 내용과 목적이 편그라운드 진접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동아리 등록 절차) 동아리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 담당 지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동아리만이 등록할 수 있다.
2. 등록동아리 선정 방법은 매년 서류심사와 면접(혹은 면담)을 거쳐 선정한다.
3. 동아리 등록신청 서류는 동아리활동 신청서, 연간운영계획서, 동아리회원명단, 부모님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6조(동아리 연합회 구성)

1. 편그라운드 진접 청소년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하여 결속력을 다진다.
2. 동아리연합회 임원은 정기회의를 통해 회장, 부회장, 서기, 홍보 단장, 기획 단장로 구성한다.
3. 동아리연합회 회의 진행 시 담당 지도자를 지도위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청소년동아리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미를 준수한다.

1. 정기회의 시간에 휴대폰 사용 금지한다.
2. 정기회의 시간에 잡담하지 않는다.
3. 사유를 말하지 않고 회의 불참하지 않는다.
4. 정기회의 시간 및 자율 시간 등 지각하지 않는다.
5.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지킨다.
6. 동아리 모든 활동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친구가 의견을 발표할 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다.
8. 사유 없이 동아리를 탈퇴하지 않는다.
9. 온라인(단체 카톡방) 공지글 잘 확인하고 예의를 지킨다.
10. 동아리 활동 시 비방 및 욕설을 금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 한 달에 해야 할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배로 동아리 활동 참여하기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 2달에 한 번씩 활동 MVP에게 간식 선물 제공
- 정기회의 및 자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아리팀 공간 우선권 제공

제8조(동아리 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편그라운드 진접의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1. 기관 명예손상 및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였을 경우 및 고의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동아리 시설 사용 규칙 및 활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경우(정기모임 3회 이상 불참 등)

제9조(동아리 지원 사항) 편그라운드 진접 등록(소속) 동아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기자재를 무료로 지원한다.
2. 동아리 자체 회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목적과제의 경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전문가 외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연간 활동 및 출석률, 대내·외 공연 참가, 재능 나눔 봉사 참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우수활동 동아리로 선정된다.
4. 문화의집 행사 참여 시 동아리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10조(동아리 운영의 합리화)

1. 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 정기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대표자 불참시에는 부대표자가 대리 참석하여야 한다.)
2. 동아리는 본 동아리 규칙을 준수하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3. 동아리는 편그라운드 진접 주관행사 공연 및 봉사활동 등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4. 동아리는 대내 활동 시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
5. 동아리는 편그라운드 진접 주관·연계하는 곳에서 공연 및 봉사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동아리 집회 및 시설 이용 준수사항)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동아리 활동 시에 사무실에 비치된 동아리 일지 및 회의 일지를 작성한다.
2. 동아리 활동 후에는 다음 모임 동아리를 위하여 깨끗이 사용했던 공간을 정리한다.
3. 필요한 비품, 물품 사용 시 동아리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는 당사자 및 동아리 회원이 전액 배상 및 책임진다.
4. 시설 내·외에서는 폭행, 절도, 음주, 흡연, 언어폭력을 하지 않는다.
5. 동아리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1층 언더그라운드, 2층 휴게실, 4층 댄스 공간 등 사용할 수 있다.
6. 모든 사용 시설 배정의 권한은 문화의집 및 담당자에게 있으며, 프로그램실 사용 취소는 최소 1일 전 동아리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개월 동아리 이용이 제한된다.

제12조(시설 사용 제한)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공간 사용뿐만 아니라 소속 동아리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1회 경고 시 담당자가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무단 사용 또는 훼손시켰을 경우
2. 편그라운드 진접 실내 또는 인근에서 흡연 사실 적발
3. 흡연, 음주, 폭행, 금전거래, 따돌림, 갈취, 성폭력 등 청소년으로서 불건전한 행동을 보였을 경우

제13조(대외활동 지원)

1. 동아리 대내·대외 활동 시 활동과 직결되는 물품, 임차, 급량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활동 신청 시 본 기관 소속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2. 대외활동이 결정된 경우 최소 1주 전 동아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편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청소년동아리연합회‘Unique’ 운영 규정으로 제정합니다.

2023. 4. 1.

센터장 김호진 기숙사 (서명)
동아리 대표 박은미 기숙사 (서명)
동아리 부대표 김미소 기숙사 (서명)